

무통장·무인감 계좌이체 약정서

_____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주)하나은행 _____ 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무통장·무인감에 의한 계좌이체업무에 대해 본 약정서의 조건이 적용됨에 동의하며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은 ‘고객’과 ‘은행’ 간에 통장 및 지급청구서 없이 자금이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대상계좌 및 거래의 범위)

대상 계좌 및 거래한도는 다음과 같다.

출금계좌	신고인감	입금은행 및 계좌	1 일 이체한도

- 신고인감은 ‘무통장·무인감 계좌이체 신청서’에 날인할 인감이며, 출금계좌가 한 개일 경우 해당계좌의 통장인감을 날인하고, 출금계좌가 다수일 경우 계좌별 통장인감 중 한 개 계좌의 통장인감을 날인한다.

제 3 조 (업무처리절차)

- ① 본 약정은 사전 지정된 출금 및 입금계좌의 거래에 한하며, 본 거래를 처리하는 방법은 FAX 로 한다.
- ② 본 약정에 의한 거래시 고객은 「무통장·무인감 계좌이체 신청서」(이하 ‘신청서’)에 제 2 조 대상계좌의 신고인감을 날인하여 은행에 FAX 로 송부한다.
- ③ 제 4 조에서 정한 자금이체 신청직원은 ‘신청서’를 송부한 즉시 ‘은행’에 송부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받은 은행은 제 4 조에서 정한 자금이체 확인직원에게 신청서 송부 사실 및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한다.
- ④ 은행은 고객의 ‘신청서’상 인감이 제 2조의 신고인감과 외견상 일치할 경우 통장 및 지급청구서 없이 대상거래를 처리한다. 이때 출금계좌, 입금계좌, 자금이체 신청직원의 인/서명 등을 대조한다.
- ⑤ 은행은 업무처리가 완료된 후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고객이 지정한 Fax (0000-0000-0000 직접기재) 로 송부한다
- ⑥ 고객은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고객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본 약정에 의한 이체를 원본 제출시까지 중단할 수 있다.
- ⑦ 고객이 ‘신청서’ 송부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않았거나, 은행이 ‘신청서’를 수령하고 자금이체 확인직원에게 확인전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당일 업무처리 가능시간 내에 전화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청한 거래를 실행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제 4 조 (신청 및 확인직원 지정)

① 고객은 본 약정에서 정한 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신청 및 확인직원을 지정한다.

1. 자금이체 신청직원

성명	직위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인/서명)

2. 자금이체 확인직원(자금이체 신청에 대하여 확인해 줄 고객 직원)

성명	직위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비 고

② 자금이체 신청직원과 자금이체 확인직원은 동일할 수 없으며, 복수확인 대상 금액 지정이 없거나 복수확인 대상 금액 미만일 경우 1.(자금이체 신청직원)과 2.(자금이체 확인직원)의 기재순서에 관계없이 각각 1인에 의하여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하다. 자금이체 확인은 기재된 회사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한다.

③ 자금이체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고객은 제 1 항의 자금이체 신청 및 확인직원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복수확인 대상 금액은 출금 건별 금액 기준으로 한다.

복수확인 대상 금액	(한글로 기재)	원 이상
------------	----------	------

④ 고객은 자금이체 신청직원, 확인직원의 변경 또는 전화번호 등 관련정보의 변경 시 지체 없이 은행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객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⑤ 자금이체 신청직원 및 확인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는 본 업무처리에 한하여 이용한다.

제 5 조(약정기간)

① 본 약정의 계약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된다.

② 본 약정에 의한 최종이체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본 약정에 의한 이체거래가 없을 경우 은행은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약정기간에 대해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 6 조(면책사항)

① 은행이 '무통장·무인감 계좌이체 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신고된 인감/서명을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신고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은행의 귀책사유 없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기기 회선 컴퓨터의 고장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업무처리의 지연, 불능, 기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제 7 조(계약의 변경)

본 약정의 내용 변경은 ‘고객’과 ‘은행’ 상호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그 변경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8 조(기타사항)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당해 계좌의 상품약관을 따른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고객’과 ‘은행’이 각 각 1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객]	[은행]
(주) _____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 지점
주소 _____ :	주소 _____
대표이사 _____ (법인인감)	지점장 _____ (인)